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73호)

◦ '96. 11. 16.

◦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6. 11. 6.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6. 11. 14.
- 다. 위원회 상정일자 : '96. 11. 15.
- 라. 위원회개최 회수 및 일수 :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최동영)

#### **가. 제안이유**

- 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96.10.5 4개정 공포)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시행규칙중 개정규칙(제2783호로 96.10.10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기준 등 일부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

#### **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1)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

- (2) 점용료의 미부과대상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 (3)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토록 하였음. (안 제7조 제3항 신설)
- (4) 과태료 수입을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구수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신설)
- (7)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변경하였음.

#### ○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 수도관 · 하수도관 · 전기관 · 전기통신관 · 가스관 ·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 (구경)에 따라 세분화 하였음. (안 별표1 제2호)

(단위: 원)

현 행	개 정 안
· 직경 1m 초과 2m이하 : 17,500	· 직경 1m 초과 2m이하 : 13,100
	· 직경 2m 초과 3m이하 : 21,850
	· 직경 3m 초과 : 30,600

-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양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8호)

·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안  
별표1 비고 제5호)

·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계산도록 하였음. (안 별표1 비고 제  
6호)

(6)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호)

(7)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과태료의 기준을 일부 변경 신설하였음.  
(안 별표3)

도로점용허가후 초과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  
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면적  
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변경하고 ①도로의 굴착공사후 주요  
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②굴착공사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지하매설물의 관리자 ③주요지  
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의 기준표를 신설하였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보고자 : 이 휘 남 전문위원

◦ 주요요지 :

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초구 조례를 개정 ·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  
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성안된 것으로 판단됨.

나.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서울시조례와 규칙이 '96.10.5 과 10.10에 각각 개정공포됨으로 인하여 우리구의회에의 제출이 자연되었으나 안 부칙 ② 경과조치 단서규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는 조속한 의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관련법규등 (생략 - 의안검토 보고서 참조)

- 도로법 - 제40조, 제43조, 제77조의2, 제80조의2, 제86조의2
- 도로법 시행령 - 제26조의2
-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96.10.5)
-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96.10.10)

####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안) 대로 개정되면 개정전과 점용료의 차이는 ? → 9월말 현재로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11억4천만원이며, 그중 9억4천만원이 징수되었음. 개정후에는 통신구 등 짐용료가 5억8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감소하여 7~8천만원 줄어들 것이 예상됨.
- 작업구, 통신구 등을 96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간 어떻게 징수했나 ? → 한전이 통신구에 대한 정율제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원이 정액제를 권고해 옴에 따라 그간 부과를 보류했던 것인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96년도분을 부과해야 함.
-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는다는는데 ? → 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액에서 「× × 750원」의 50원을 부징수 한다는 것임.
- 서울시의 조례와 규칙이 '96. 10. 6, '96. 10. 10 각각 개정됐는데 왜 지금 에야 이 의안이 제출되었나 ? → 서초구가 입법예고 등을 미리 준비 시행했으나 구 자체의 조례심사 · 제출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급격히 인상하는 이유는 ? →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한선을 인상한 것인데,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합리적인 과태료가 될 것임.
- 과오납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 → 과거 건축허가 이전에 미리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가 그후 사정이 바뀌어 허가취소나 사용면적 축소등으로 점용료를 환급할 때 각 구별로 환급이자 계산기준이 없어 분란이 있던 사항이며, 월 1건 정도 발생함.
- 직경 1m 초과란 ? → 직경 1m 초과하는 관이 1m 길이 일때를 말함.
- 과태료 300만원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 → 시행령 내용이므로 이를 초과 할 수 없음.
- 시행시기에 있어 시행령은 96.7.1 시조례는 96.10.5 인데 구조례는 지금 개정한다면, 1년 단위로 받는 점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이므로 일반적인 점용료는 시행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적용하고 다만 작업구 · 통신구 · 전력구만 그간 보류했던 96년도분을 부과 징수하는 것임.
- 허가면적을 도로에 표시할 용의는 ? → 허가면적을 LINE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참고로 인도는 1/2이상 못하도록 되어있음.
- 3m 초과의 경우는 17,500원 이던 것이 30,600원이 되는데, 작업구와 통신구 등은 감사원의 지시로 보류했다가 늦게 제정한 법으로 96년도분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 이는 한전등이 정율제를 정액제로 개정요구 하였고, 결국은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점용료 수입은 줄어들게 됨.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가. 찬성 :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바라며 찬성토론 함. (김용재 위원)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됨.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예산조치 : 없음  
나. 연석회의, 공청회 등 : 없음

##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없음